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휴먼뉴딜 한국판뉴딜

배포일시	2021. 7. 28.(수) 석간 *인터넷 2021. 7. 28.(수) 10:30 이후 / 총 14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과 장 박종일 사무관 이철호	044-202-8850 044-202-89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단	단 장 김형석 차 장 이중곤	052-703-0611 052-703-0615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끼임사고」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 7.28.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장관 직접 나서 -

□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3천여 개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 일제점검 실시

○ 5백여 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도 사업장 집중 기술지도

□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폭염 관련 위험요인도 함께 확인

□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는 2021.7.28.(수) 3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7.14.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현장점검의 날」에 이은 두 번째 전국 일제점검으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800여 명뿐만 아니라 전국 500여 개 민간 재해예방 기관도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 (민간 재해예방 기관) ▲건설 157개, ▲안전 192개, ▲보건 192개

○ 특히, 이번 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나서서 사업장의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주 등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적극적 안전조치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 **끼임 사고**는 전체 사고사망 유형 중 **2번째로 많은 재해**로, 특히 **제조업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다.

* ('20년 산재 사고성 사망사고 유형) 전체 사망자 882명 중 ▲추락(328명, 37.2%), ▲끼임(98명, 11.1%), ▲부딪힘(72명, 8.2%) 등 順

(단위: 명, %)

구분	계	떨어짐		끼임		부딪힘		물체에 맞음		깔림 뒤집힘		사업장외 교통사고		화재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882	328	37.2	98	11.1	72	8.2	71	8.0	64	7.3	54	6.1	46	5.2	149	16.9

* ('20년 제조업의 산재 사고성 사망사고 유형) 전체 사망자 201명 중 ▲끼임(60명, 29.9%), ▲추락(41명, 20.4%), ▲부딪힘(24명, 11.9%) 등 順

(단위: 명, %)

구분	계	끼임		떨어짐		물체에 맞음		폭발·파열		깔림·뒤집힘		부딪힘		기타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20년	201	60	29.9	41	20.4	24	11.9	18	9.0	15	7.5	14	7.0	29	14.4

□ '16~19년간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272건을 분석한 결과, **끼임 사고의 발생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감축 및 사업장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년)

① 가동 중인 기계장치의 끼임부에 **방호장치가 없거나,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 또는 정비**(52.6%)

②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고 내부에 들어가 점검·수리 중 **외부의 작업자가 이를 모르고 기계를 조작**(10.7%)

③ 작업 중 갑자기 정지한 기계를 **전원 차단 없이 점검·수리 중 정지 원인이 해결되면서 기계가 재가동**(9.6%)

④ **설비 주변 작업자를 보지 못하고 해당 설비를 조작**(8.8%)

□ 따라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다음 3가지를 집중점검** 한다.

① 원동기, 회전축 등 끼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덮개, 울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가동 중** 기계·기구에 **접근을 제한**하는지 여부

② 정비, 보수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 에너지원을 반드시 차단**하는지 여부

③ 다른 근로자가 정비, 보수 중인 기계를 조작할 수 없도록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 절차 준수 여부

□ 제조업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취급하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7월 19일 **폭염경계경보**가 발령되고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정부합동대책의 일환으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지도 집중 확인**한다.

○ 특히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조선업**과 **철강업**, 물류센터 등에 대해 **폭염대응 상황 역시 점검**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병행 점검

□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점검에 앞서 “제조업 **끼임 사고**는 **①방호장치 설치, ②정비 중 가동정지, ③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강조하면서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이례적인 폭염 상황**인 만큼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분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 줄 것”을 회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 한편 **지난 7월 14일 첫 번째 현장점검**의 날에는 총 **3,54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했으며 **2,448개(69.1%) 현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붙임 1. 사망사고 사례(사출성형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1부.
2.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자율점검표 1부.
3.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자율점검표 1부.
4.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1부.
5. 코로나19 예방수칙 1부. 끝.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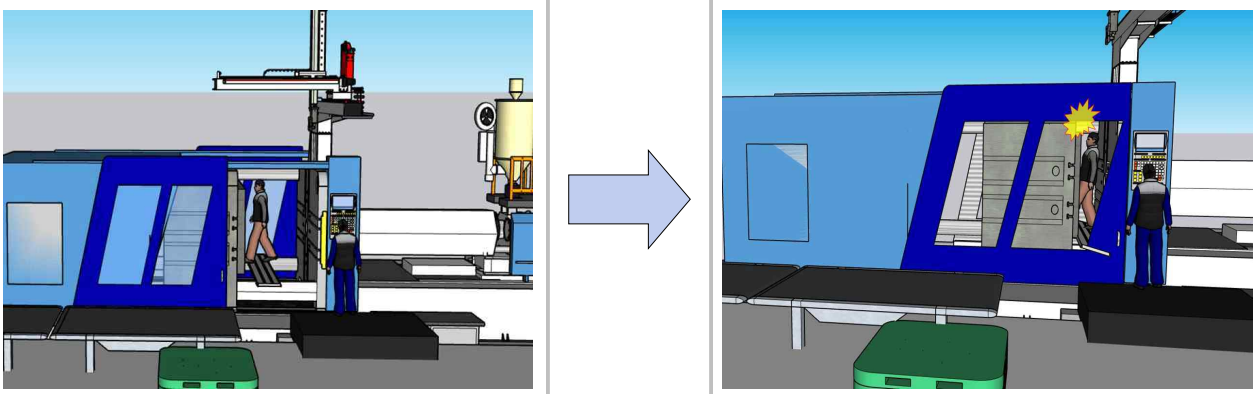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사무관(☎044-202-8904)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끼임 사망사고 사례(1. 사출성형기)

재해개요

2020.2.7. 충남 예산군에 있는 OOO에서 사출성형기 내부 슬라이드 코어를 점검하던 중 사출성형기의 게이트 가드가 작동되면서 내부에 있던 작업자가 금형 사이에 끼어 사망

재해상황도



재발방지 대책

○ **점검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 조치 철저**

- 사출성형기 점검·청소·수리·교체 등의 작업 시 전원 차단 등 운전을 정지하고, 설비 가동 전 위험한 지역 내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 실시

○ **방호장치 기능 유지·관리 철저**

- 사출성형기 방호장치는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작업 시작 전 방호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 사고사례 자료출처 https://www.kosha.or.kr > 자료마당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끼임 사망사고 사례(2. 천장 크레인)

재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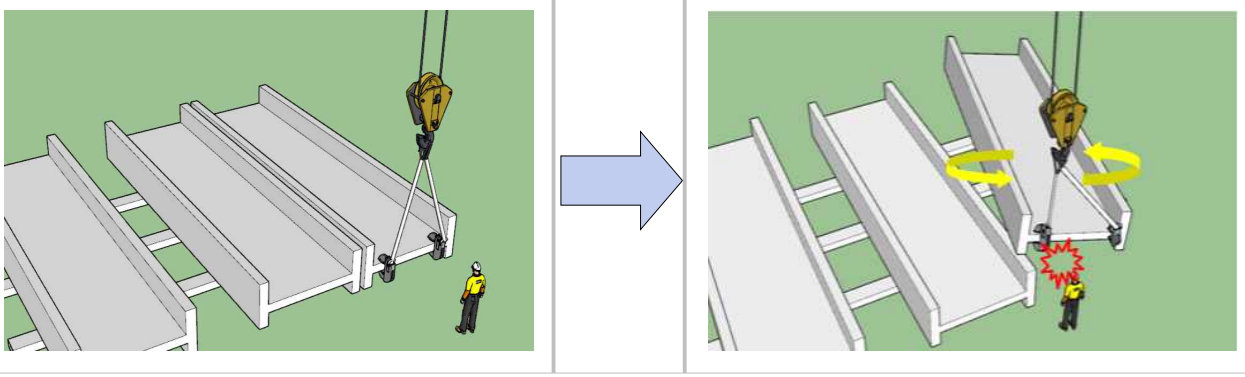
2021.5.21. 경남 고성에 있는 ○○○에서 천장크레인을 철판 부재 사이에서 조작하며 위치를 조정하던 중, 철판 부재사이에 작업자가 끼어 사망

[유사 재해사례]

2021.4.17. 경북 경주에 있는 ○○○에서 동료 작업자들과 132톤 기중기를 이용해 제품을 야적하던 중 야적되어 있던 제품과 야적을 위해 이동 중인 제품 사이에 작업자가 끼어 사망

2021.2..16. 부산에 있는 ○○○에서 작업자가 천장크레인으로 코일(약 13톤)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인양 중인 코일과 인근에 적재된 코일(약 6.3톤)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

재해상황도



재해예방 대책

○ **중량물 특징에 따른 위험요인 파악**

- 현장에서 취급하는 **중량물**의 형태, 무게, 특징 등에 따른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투입 전에 해당 공정의 **위험요인을 인지**시킨 후 작업에 투입하도록 관리

○ **작업지휘자 지정 및 위험구역 설정**

- **작업지휘자**를 지정 후 **배치**하여 중량물 취급 시 끼임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근로자의 이동경로를 구분하여 중량물에 작업자가 부딪히거나 끼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 개시

* 사고사례 자료출처 https://www.kosha.or.kr > 자료마당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끼임 사망사고 사례(3. 산업용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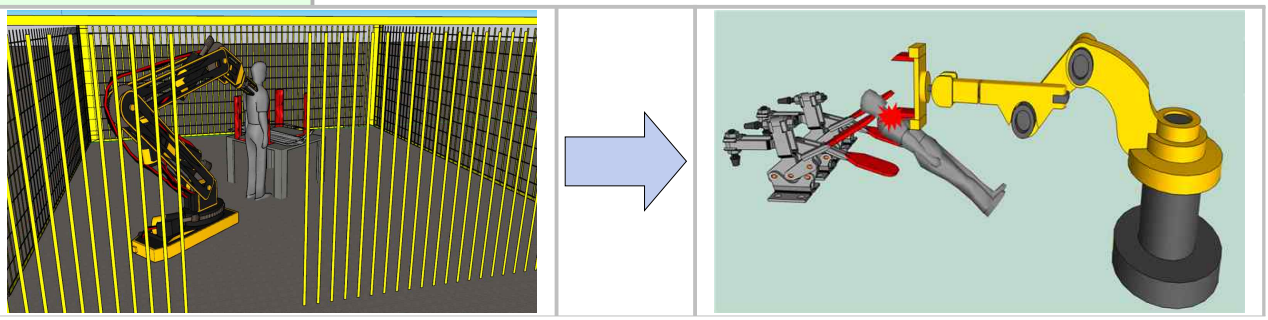
재해개요

2021.5.20. 경남 함안군에 있는 ○○○에서 작업자가 선반의 절삭 날 교체 작업을 위해 산업용 로봇 팔이 움직이는 공간 내부로 들어가(출입문의 안전 플러그 무효화 상태) 보수작업을 하던 중 로봇 팔(Arm)이 작동되면서 로봇 팔과 선반 사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

[유사 재해사례]

2021.4.6. 경북 경주시에 있는 ○○에서 작업자가 무한궤도 부품 검사 로봇이 움직이는 공간 내부로 들어가(출입문 안전 플러그 무효화 상태) 로봇에 부착된 센서를 해체 작업하던 중 로봇 팔(Arm)에 부착된 지그(jig)와 적재 대 사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

재해상황도



재발방지 대책

○ 정비 작업 시 운전 정지

-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수리(인서트 팁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 및 선반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로봇의 기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

○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산업용 로봇 작업이 있는 경우 로봇 셀 출입문의 안전 플러그 등 안전 연동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서는 안됨

○ 로봇 셀 내부에 안전매트 등 설치

-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 작업자가 해당 위치에 있는 경우 로봇이 동작하지 않도록 작업 위치에 안전매트 등을 설치

* 사고사례 자료출처 https://www.kosha.or.kr > 자료마당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붙임2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자율점검표**

「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추락·끼임사고 예방 일제점검」

안전은 권리입니다

「일제점검」 핵심내용

'21년 7월부터 「추락·끼임사고 예방 일제점검」 시행

전국 동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시에 실시(1,800명 참여)

추락·끼임에 집중

사고사망 핵심영역 (건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 안전조치 집중점검

불량현장 강력 대응

점검 결과 위험방치 등 불량현장은 반드시 감독, 행·사법조치

끼임 사고사망 발생사례

① 가동 중인 컨베이어 롤러 이물질 제거중 끼임



② 로봇 작업영역 내에서 점검 중 끼임



③ 사출성형기금형 설치 중 금형 사이에 끼임



④ 프레스 금형 조정 중 금형 사이에 끼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할 사항(일제점검 시 집중점검)



원동기, 회전축 등에 덮개, 울 등 설치



정비, 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기동장치 잠금조치, 표지판 설치

2021-교육혁신실-395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끼임」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끼임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 사업장명 :

□ 점검일자 :

□ 점검자명 :

번호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인 경우 관련 인증·검사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가?		
2	안전인증·안전검사를 받을 당시의 방호조치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3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임의 해체하거나 기능을 해제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가?		
4	끼임 위험이 있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체인 등에 대한 방지조치(덮개, 울 등 설치)는 적정한가?		
5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였는가?		
6	사용 중인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한 정비 작업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절차를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대상작업** 정비·청소·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시 **조치절차** ❶ 해당 설비 등의 운전정지 ❷ 기동스위치 잠금조치 ❸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7	기계·기구 또는 설비 사용 중 고장 등 이상 발생 시 운전정지 등의 조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8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갖춘 지게차를 자격 보유자가 조종하는가?		
9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붙임3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자율점검표**



「추락」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추락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 사업장명 :

□ 점검일자 :

□ 점검자명 :

번호	점검내용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조치사항
1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2	바닥면에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3	작업발판, 안전난간이나 개구부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4	안전난간 부착이 곤란한 경우(철골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주요 이동통로)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5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시작 전 반드시 점검하는가?		
6	선라이트,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폭 30cm 이상)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있는가?		
7	달비계 작업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가? ❶ 안전대 및 수직 구명줄 설치 ❷ 작업용 로프 결속 및 고정부 상태 ❸ 로프 파손 및 접속부 마모상태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붙임4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폭염특보는?

○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 발령(2020년 시범운영)

체감온도란?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 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입니다.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늘



-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 쉬고자 하는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씩 휴식 등
- 근무시간을 조정(예 : 9~18시 → 5~14시)하여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피하십시오.
-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

발생 전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현기증,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온도 및 습도에 따른 체감온도

● 폭염영향예보 (폭염특보) 관심 주의 (폭염주의보) 경고 (폭염경보) 위험

상대습도 / 실제기온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50	27.1	28.1	29.1	30.1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55	27.5	28.5	29.5	30.5	31.5	32.5	33.5	34.5	35.5	36.5	37.5	38.5	39.5	40.5	41.5
60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1	42.1
65	28.4	29.4	30.4	31.4	32.4	33.4	34.4	35.4	36.5	37.5	38.5	39.5	40.5	41.6	42.6
70	28.8	29.8	30.8	31.8	32.8	33.8	34.9	35.9	36.9	37.9	39	40	41	42.1	43.1
75	29.2	30.2	31.2	32.2	33.2	34.3	35.3	36.3	37.4	38.4	39.4	40.4	41.5	42.5	
80	29.5	30.6	31.6	32.6	33.6	34.7	35.7	36.7	37.8	38.8	39.9	40.9	41.9	43	
85	29.9	30.9	32	33	34	35.1	36.1	37.2	38.2	39.2	40.3	41.3	42.4	43.4	
90	30.3	31.3	32.3	33.4	34.4	35.5	36.5	37.6	38.6	39.6	40.7	41.7	42.8		
95	30.6	31.7	32.7	33.8	34.8	35.9	36.9	37.9	39	40.1	41.1	42.2	43.2		
100	31	32	33.1	34.1	35.2	36.2	37.3	38.3	39.4	40.4	41.5	42.6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숙지하십시오.

관심 체감온도 31℃ 이상

- 질병예방(식중독, 장티푸스 등)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관리에 유의
- 충분한 수분섭취를 위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준비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을 할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 작업자가 쉴 수 있는 그늘 제공
- 매시간 마다 15분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옥외작업 자제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폭염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하세요!!

-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 수면부족 등 집중력저하로 인한 떨어짐,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



붙임5 **코로나19 예방수칙**

질병관리본부 KCDC

해외감염병 NOW 1339

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홈페이지 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1